

공공심야약국 지정서

- 약국의 명칭:
- 약국의 소재지:
- 성 명: (생년월일:)
- 면허종류:
- 면허번호:

「약사법」 제2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
위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
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